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8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박준태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강대식

구자근 • 고동진 • 주호영

백종헌 · 임이자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그 세부적인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「자동차등록령」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,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현행 「자동차등록령」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,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·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이전등록) ① ~ ⑥ (생	제12조(이전등록) ① ~ ⑥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시・도지사는 자동차 소유
	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에
	게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의
	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⑦</u> (생 략)	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